



# 우유 및 유제품 포장 표시에 대해

Labeling for Daily Product

牧野收孝 / 삼영유업(주)

## I. 서두

식품 포장의 역할 중에 내용물 보호 기능이 있다. 식품은 보관, 유통할 때 미생물적, 물리적, 혹은 화학적 변질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변질들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실시되고 있다.

또 하나의 역할은 상품 정보 전달 매체로써의 기능인 표시이다. 상품의 개요,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표시의무내용, 타사 상품과의 차별화 내용, 사용 방법의 설명, 경고 표시 내용 등이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안심하고 상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에 표시하고 있다.

식품의 표시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경표법), 계량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기준이 정해져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성립되어 있다.

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JAS법에 기초해 '가공 식품 품질 표시 기준'에서 원재료 표시 등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일괄 표시하토

정해져 있다.

여기에서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버터, 치즈 등에 관한 표시에 대해 법규에 규제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 1. 법률 규정 포장 표시 기준

우유 및 유제품 관계 표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관계 법규로는 식품위생법, JAS법, 경표법, 건강증진법(영양개선법), 용기 포장에 관련된 분별 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용기포장 재활용법)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조물책임법(PL법) 등이 있다.

### 1-1. 식품 위생법에 의한 표시 기준

후생노동성이 소관하고 있는 식품 위생법에서는 음식에 기인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판매용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에 관한 표시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그 표시 기준 위반 식품의 판매, 판매용 진열, 영업

(표 1) 우유 및 유제품의 각 제품별 표시 기준 일람

제조소 제조업체(처리업자) 소재지 이름	첨가물 포함	한식품의 표시 포함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	보존방법	주요성분		주요원료		주요혼합물		제조업체(처리업자) 소재지 이름
					무지류	분류	유지방	분류	유지선풍기와의 접촉방법	분류	
유 우유	생유	○ 생유인것									○
	생산양유	○ 생산양유인것									
	생면양유	○ 생면양유인것									
	우유, 탈지유	○ 10.5°C 포인트 이상	○(1)	○	○(3)(4)					○(6)	○
	살균 산양유	○ 10.5°C 포인트 이상		○	○(3)(4)					○(6)	○
	특별우유	○ 10.5°C 포인트 이상		○ 살균인한것	○(3)(4)					○(6)	○
	부분 탈지유	○ 10.5°C 포인트 이상	○(1)	○	○(3)(4)		○			○(6)	○
	가공유	○ 10.5°C 포인트 이상	○(1)	○	○(3)(4)		○		○ 주원료명	○(6)	○
	크림	○ 14°C 포인트 이상			○(2)(3)(4)		○(2)			○(2)(6)	○
	크림파우더	○ 14°C 포인트 이상			○(2)(4)		○(2)			○(2)(7)	○
유 제 품	버터, 버터오일, 단백 질, 농축 헤이 파우더, 버터 밀크, 파우더	○ 14°C 포인트 이상			○(2)(4)		○(2)			○(2)(7)	○
	내츄럴 치즈	○ 14°C 포인트 이상			○(2)(4)				○(2)(8)	○(2)(7)	○
	가공 치즈	○ 14°C 포인트 이상			○(2)(4)				○(2)	○(2)(7)	○
	아이스크림류 (아이 스크림, 아이스밀크, 각종아이스)	○ 14°C 포인트 이상			○(2)(4)(5)	○(2)	○(2)	○(2)	○(2)	○(2)	○(10)
	농축유, 탈지 농축유	○ 14°C 포인트 이상			○(2)(4)					○(2)(6)	○
	무당 연유, 무당 탈지 연유, 전분유, 탈지 분유	○ 14°C 포인트 이상			○(2)(4)					○(2)(7)	○
	기당 연유, 기당 탈 자분유, 기당 분유, 조제분유	○ 14°C 포인트 이상			○(2)(4)				○(2)	○(2)	○(10)
	발효유	○ 8°C 포인트 이상			○(2)(3)(4)	○(2)	○(2)	○(2)	○(2)	○(2)(7)	○
	유산균 음료(무지유, 고점분 3% 이상)	○ 8°C 포인트 이상 (유제품인것)		○ 살균인한것	○(2)(3)(4)	○(2)	○(2)	○(2)	○(2)	○(2)(7)	○
	유음료	○ 14°C 포인트 이상	○(1)(2)		○(2)(3)(4)	○(2)	○(2)	○(2)	○(2)	○(2)(6)	○
유제 품 주 원 료 로 한 식 품	유산균 음료	○ 8°C 포인트 이상			○(2)(3)(4)	○(2)	○(2)	○(2)		○(2)(7)	○
	기타 유제품을 주원 료로 한 식품	명칭 및 상호명				○(2)	○(2)	○(2)			○

(1) 상은 보존 가능품에 대해 기재한다.

(2) 1회 수수에 10개 이상의 용기 포장 된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주요 재료로 한 식품 중 원재료로 사용된 것을 유제품 제조업, 청량음료수 제조업, 유산균 음료 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할 경우에 있어서는 상태를 기재한 것으로 용기포장에 하는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한다.

(3) 종이의 덮개나 합성수지 가공 알루미늄 박으로 밀봉한 포장 용기에 넣은 것은 기한 표시의 연월일을 일의 기재로 대신할 수 있다.

(4) 제조나 가공일로부터 품질 보증 기한까지의 기한이 3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기한 표시의 년월일을 년월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품질 보증 기한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 기한과 동일한 기한을 나타내는 문자로써 후생 노동 총리가 정한 문자를 기재해도 상관없다.

(5) 생략할 수 있다.

(6) 유생령에서 정한 보존 방법의 기준에 맞는 보존 방법을 기재한다.

(7) 상온에서 보존할 경우에는 상온에서 보존한다는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8) 소 이외의 동물의 젖을 원료로써 제조하는 제품은 해당 동물의 종류도 기재한다.

(9) 아스파르테임을 포함한 식품은 'L-페닐알라닌 화합물' 포함이라고 표시한다.

(10) 유 처리장이나 제조 소재지의 기재는 유 처리업자나 제조업자의 주소, 이름 및 유 처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후생 노동 총리에게 제출한 유 처리장 및 제조소 고유 기호의 기재로 대신할 수 있다. 수입품은 수입업체의 이름(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을 기재한다.



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생령(유생령)' 중에서 종류 별 명칭, 상온 보존 가능품인 것, 실균 온도 및 실균 시간, 품질 보존 기한, 보존방법, 주요성분, 주요원료 및 주요 혼합물, 첨가물, 제조소 소재지 및 제조업자명 등의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2001년 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유생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함했다는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표 1]은 우유 및 유제품의 각 제품별 표시 기준의 일람이다.

## 1-2. JAS법에 의한 표시기준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JAS 규격제도(일본농림규격), 품질표시 기준제도, 유기(오개나)표시,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 등이 제정되어 있다.

상품에 관한 사실, 가치가 바르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소비자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 적절하게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용 모든 음식료품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 표시 사항으로는 생선 식품에 대해서는 명칭 및 원산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통기한, 보존방법 및 제조업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로 되어 있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항들을 일괄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단, 경표법 규정에 기초해서 공정 경쟁 규약에

정해진 표시사항 외에 법령에 의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한편 유기 농산물의 표시에 대해서는 1999년 7월 JAS법 개정에 의해 검사·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유기 식품이 특정 JAS 규격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기○○' 또는 '오개나○○' 등의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 1-3.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기준

이 법률은 상품 및 작업 거래에 관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해 고객의 유혹을 방지하고 자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더욱더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법의 제10조에 공정 경쟁 규약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나 사업 단체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경품이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주적으로 설정하는 업계의 규칙이다. 우유 및 유제품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다음과 같다.

- ① 음용유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 ② 내츄럴 치즈, 가공 치즈 및 치즈 푸드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 ③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의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규약
- ④ 발효유, 유산균 음료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 ⑤ 실균 유산균 음료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등이 있고 필요 표시 사항, 표시 금지 사항, 부당 표시의 금지, 부당 광고의 금지, 위반에 대한 조사, 조치 등이 제정되어 있다.

(표 2-1) 가공식품의 표시 예(우유)

구분	법률명*	일괄 표시 내용
유 (우유)	1 2 3	종류별 명칭 우유***
	3	상품명 ○○우유***
	3	무지유 고형분 8.3% 이상
	3	유지방분 3.5% 이상
	2 3	원재료명 생유 100%
	1 3	살균 130°C 2초간
	2 3	내용량 1000ml
	1 2 3	품질보증기한 상단에 기재
	1 2 3	보존방법 10°C 이하로 보존하세요.
	3	개봉 후 취급 개봉후에는 냉장고에서 10°C 이하로 보존하고, 품질보증기한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빨리 드십시오.
	1 2 3	제조소 소재지 도쿄도 ○○-○○
	1 2 3	제조자 ○○유업(주) ○○공장

※ 표시 1. 식품위생법 2. JAS법 3. 공정경쟁규약

※※ 표시 포인트 10.5P 이상

(표 2-2) 가공식품의 표시내용 및 사항

기타 표시 내용	<p>① 일괄 표시 외에 종류별 명칭을 상품명 근처에 기재한다.</p> <p>② 상온 보존 가능품은 '상온보존가능품'의 문구를 상품명 근처에 규정의 글자 크기로 표시한다.</p> <p>③ 일괄 표시 외에 상품명을 규정 기준에 의해 명료하게 표시한다.</p>
특정 사항	<p>① 성분이나 품질을 강조하는 문구를 표시할 경우에는 음용유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른다.</p> <p>② 생유 사용에 관한 표시를 일괄표시란 이외의 곳에 표시할 경우에는 상품명의 주변 부분에 '생유 100% 사용'과 14포인트 이상의 문자로 표시한다.</p> <p>③ 덮개형 종이팩 용기의 상단의 일부를 1곳, 규정의 크기대로 절단 표시를 할 수 있다.</p>

#### 1-4. 건강증진법(영양개선법)에 의한 표시 기준

이 법률은 일본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및 질병 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 영양 개선,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영양개선법으로 바뀌어 제정됐다. 표시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특별 용도 표시의 허가

판매하는 식품에 신생아용, 유아용, 임산부용, 환자용 그 외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하려고 하는 자는 후생 노동 총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② 영양 표시 기준

판매하는 식품에 영양표시(영양성분이나 열량에 관한 표시)를 하려고 하는 자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며 영양 표시가 된 것을 수입하는 자는 후생노동총리가 정한 영양 표시 기준에 따라 필요한 표시를 해야 한다.

#### 1-5. 용기 포장에 관련된 분별 수집 및 재상품화

용기 포장에 관련된 분별 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용기포장 재활용 법)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의한 표시기준이 두 가지 법률은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별 수집 및 이에 의해 수집된 분별 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일반 폐기물의 감량 및 재생자원의 충분한 이용 등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확보를 꾀하고 생활환경 보전 및 국



## 세계의 포장

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률에서는 지정 표시 제품에 관련된 재생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무생령(특정 용기 포장 표시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한 생령)에 지정 표시 제품마다 재질이나 성분, 분별 회수에 관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 등 표준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틸 캔(음료나 주류용) 및 알루미늄 캔(음료나 주류용)이 1991년 10월부터, 음료 및 간장류나 주류용 PET제 용기가 1993년 6월부터, 종이제 용기포장(‘골판지’ 및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는 음료용 종이 용기’를 제외) 및 플라스틱제 용기포장(그 외 PET제 용기포장 포함)이 2001년 4월부터 식별표시의 대상이 되었다.

## 2. 주요 임의 표시 사항

### 2-1. PL법 관련 표시

제조물 책임법은 1994년 7월 1일에 공포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품의 표시나 경고’는 제조물의 특성의 일부로 여겨지고 적절한 표시나 경고가 없으면 결함이 되는 것도 있다. 식품은 시간이 경과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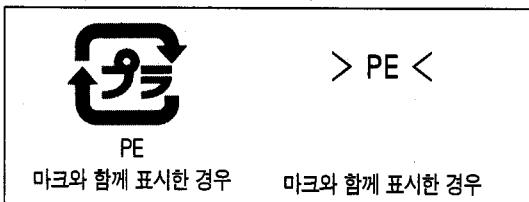
[표 3] 용기포장 식별마크

구 분	식별마크	비 고
표 시 의 무 있 다	스틸 캔	음료 및 주류 캔만 법정표시의 대상(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의한 표시 의무) 화장캔 등 일반 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알루미늄캔	
	PET 보틀	음료 · 주류 · 간장용만 법정표시의 대상(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의한 표시 의무)
	종이제 용기포장 플라스틱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의해 새롭게 식별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재질 표시를 할 경우에는 JIS 방식
표 시 의 무 있 다	용기포장	에 의한다. 식별 마크의 하단에 영어의 약어로 표기한다.
	유리	무색 · 차색 · 그 외 3종류
	음료용 종이 용기	알루미늄박을 사용한 것은 제외
표 시 의 무 있 다	골판지	국제골판지협회(ICCA)에서 국제 공통 마크를 제정. 업계에서 자주 운용 기준을 검토중이다.

따라 변화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존 방법의 표시가 없으면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고 표시의 결함이 결함의 존재를 판단할 때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존 방법, 조리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일과 정확한 표시가 요구된다.

[그림 7] 용기포장의 재질표시



### 2-2. 용기 포장 재질 표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의한 표시 의무는 없이 사업자의 판단에 맡기는 자주 표시로 되어 있다.

재질 표시를 하는 경우는 JIS 방식의 기호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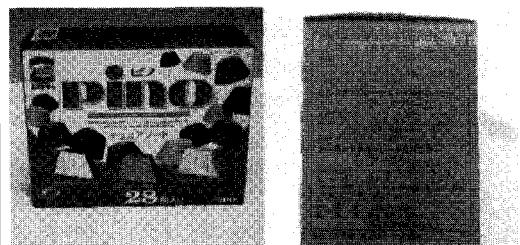
(그림 8) 유제품 및 유제품 주원료 식품표시 예



⑤ 유아용 조제분유(유제품)



⑥ 아이스크림(유제품)



⑦ 우유로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크기, 글씨체, 자간, 행간, 색채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로 고령자가 보기 쉬운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JAS법, 건강증진법 등의 법률에서 글자 크기의 규제가 정해져 있는데 표면적이 넓은 상품은 최대한 보기 쉬운 글자의 크기를 선택해야 한다.

### 3. 유, 유제품 주원료 식품표시 사례

[그림 8] 참조. 109

#### 2-3. 일반적인 디자인을 넣은 표시

고령자, 장애자, 정상인 등 모든 소비자에게 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와 관련된 글자의